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특임공관장 추가〉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88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 건 · 박충권 · 곽규택 · 김기웅 · 정성국 · 나경원

강선영 · 김미애 · 이소희 · 윤상현 · 조지연 · 유용원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6. 5. 7.

3) 회 부 일 : 2026. 5. 8.

※ 의안번호 : 1888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특임공관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u>한국방송공사</u>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특임공관장(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경우에 한정한다)·한국방송공사--</u> ----- ----- ----- ----- ----- ----- ----- -----

현행	개정안
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8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5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5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가정 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 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 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미디 어통신심의위원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법」 제3조 및 제4조1)에 따라 외교업

1) 「외무공무원법」 제3조(임용권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외무공무원법」 제정으로 도입됨.

동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활용하여 국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특임공관장에 부임하는 인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어 왔음.²⁾

이에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특임공관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특임공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해당 직위의 위상·임무·권한과 국회에서의 검증 필요성, 제도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1.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서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파면·면직 및 해임

2.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의 실장급 이상 직위예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의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

3. 특임공관장의 임용

4.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소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서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2) 「특임공관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의원 김성곤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2)」 및 다수 언론보도 등

참고로, 우리나라의 특임공관장과 같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사로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이 있음. 미국은 재외공관장 전원을 상원 외교 위원회의 인준청문회 대상으로 하나,³⁾ 나머지 4개국은 재외공관장에 대해 의회 차원의 구속력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⁴⁾

다만, 현재 특임공관장은 아그레망(Agreement)⁵⁾을 거쳐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특임공관장 인사청문회는 주재국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데, 만약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⁶⁾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의 심사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 실시하는 공관장 자격

3) 직업 외교관 출신이든 정치적 임명 출신(우리나라의 특임공관장과 유사)이든 모두 상원의 인준청문을 거쳐야 하며,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음.

4)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해외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

5)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이의 여부를 조회하는 국제적 관례

6)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심사 및 검증절차 등이 인사청문회와 중복되는 점, 특임공관장은 차관보다 낮은 지위이고 독자적인 정책결정 권한도 없어 현행 인사청문 대상자와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외교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점, 인사청문 대상인지에 따라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의 중요도를 차등화한 것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가원수의 공관장 임용권을 존중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제 관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15

참고자료 1

역대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 현황 (26.5.29. 기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38명	33명	70명	45명	32명

자료: 외교부



도입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
제22대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5. 10.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